

독일의 공공참여 제도

써드스페이스
페이스
텍스트

2018

THIRDSPACE BERLIN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 아카데미

독일의 공공참여 제도

역사 · 법적근거 · 절차 · 사례

저자: 고정희

2018년 8월

© 씨드스페이스 텍스트

목차

1. 개요 / 개념정리	4
1.1. 독일에서 공공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4
1.2. 개념	5
1.3. 독일 주민참여 · 공공참여의 역사적 흐름	6
1.3.1. 물레방앗간 아놀드 사건	6
1.4. 반핵운동의 사회적 영향	10
1.5. 『슈투트가르트 21』 - 새로운 분기점	10
1.6. 공공참여의 새 패러다임	10
2. 『사전공공참여제도』의 도입	12
2.1. 이해관계자의 시대와 공공참여 Stakeholder Gesellschaft	12
2.1.1. 독일엔지니어링협회 (VDI) 와 독일상공회의소 (DIHK)의 입장	12
3. 공공참여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프로젝트/행정절차	14
3.1. 환경평가와 공공참여	15
3.2. 의견제시 · 수렴방법	15
3.2.1. 이의제기 · 의견제시	15
3.2.2. 수렴	16
3.3. 사례 : 브란덴부르크 갈탄광산이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18
3.3.1. 프로젝트 개요	18
참고문헌	21

1. 개요 / 개념정리

1.1. 독일에서 공공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독일의 공공참여, 혹은 주민참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한 권리다. 그러므로 지금도 참여개념은 민주주의개념과 직결되어 있다.

주민참여에서 공공참여로

1970년대 중반, 건설계획 허가절차에 최초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참여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들이 진화를 거듭해 왔다. 1976년 건설법전이 개정되고 같은 해에 자연보호법이 제정되어 환경생태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참여제도가 공식화 되었다. 이런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사회를 거의 뒤흔들었던 거센 반핵운동이었다. 반핵운동은 환경운동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집결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과 환경단체, 시민연대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녹색당이 결성되고 연방의회에 의석을 차지하는 등 역사를 만들며 사회의 분위기가 친환경을 향해 변화하는 듯 했다.

그러던 차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개발을 계기로 하여 각종 건설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구현되었다. 이는 다시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사건,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사건, 베를린 공항사건 등 굵직굵직한 <반개발 친환경> 운동이 활발히 재개되었다. 그 결과 2000~2010년 사이에 주민참여제도 제2의 분기점이 형성되었다. 주민참여의 범위와 개념이 세분화 되었으며 이제 계획이나 사업으로 침해받는 주민들만 참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참여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로서 환경단체도 <침해받는 환경의 대변인으로서> 참가자격을 얻게 되었다. 지난 시절에 데모나 쫓겨, 탄원서 제출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참여했었다면 이제는 적법한 방법으로 계획과 사업승인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사업이 허가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더라도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¹⁾에 의거하여 소송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각 환경단체는 이 권리를 십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수년간 소송에 의해 무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뒤셀도르프의 다텔른 화력발전소로서 한창 공사 중에 환경연합의 소송에 걸려 지구단위계획 무효판결을 받고 공사가 중단되었다.²⁾ 비록 공사 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슈투트가르트 지하중양역의 <S 21 프로젝트>와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베를린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전공공참여제도의 도입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공공참여라는 개념이 만구에 회자하게 되었고, 지금껏 큰 관심이 없던

1) Umwelt-Rechtsbehelfsgesetz - UmwRG 2006 개정

2) 2007년 착공,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행정법원에서 계획무효판결을 받았고 2009년부터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독일환경연합 BUND였다. (고정희 2014, 독일환경영향평가제도 중 화력, 풍력에너지시설의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규정 및 실무현황. 2. 화력발전소. KEI p.11.)

시민들도 공공참여 혹은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크게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이다.³⁾ 여러 환경단체와 녹색당의 발의로 2013년 <사전공공참여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참여제도에 정점을 찍게 되었다. 사전공공참여제도는 계획확정절차의 의무가 있는 대형프로젝트와 침해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공참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소송에 걸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행정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사전에 공공의 동의를 얻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대형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 연방주, 각 지역정부들도 해당 된다. <사전공공참여제도법>의 제정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각 연방주, 지역행정기관에서 구청까지 속속 주민참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정부, 환경단체, 연구기관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공공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산업계에서까지 공공참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일은 공공참여의 열기에 들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 개념

■ 공공참여 (Öffentlichkeitsbeteiligung)

독일에서는 2006년 <공공참여법>과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의 제정과 함께 **주민참여와 공공참여**를 구분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6년 법에 처음으로 기존의 '주민' 대신 '공공'으로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공공이란 자연인, 법인,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만 이렇게 '모두다' 참여가 가능한 것은 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계획과 사업승인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 주민참여 (Bürgerbeteiligung)

<공공참여법>으로 인해 주민참여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주민참여 자체는 살아 있다. 주민이 정책,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아래 목록에 열거된 제도들은 모두 <주민참여>로 정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아래의 방법들은 물론 공간계획이나 대형프로젝트들과 관련된 참여 경로는 아니지만 동네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로써 주민참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주민상담시간
- 주민집회
- 주민 질의 시간: 구체적인 규정은 각 시나 최소행정단위인 게마인데⁴⁾ 별로 규정하지만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게마인데 의회에 시민이 참여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연방주에 따라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게마인데 의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질의 응답시간을 정하여 이를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면 주민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접수해야 한다.
 -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3) 독일환경보호연합에 의하면 설문조사결과 79퍼센트가 공공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BUND 2012, Sechs-Punkte-Programm, Ausbau und Effektivierung der Bürger- und Verbandsbeteiligung p. 3

4) 게마인데는 최소행정단위를 말한다. 특이한 점은 시지역시 게마인데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최소행정단위의 기준은 그 규모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라 볼 수 있다. 독일의 게마인데는 계획자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를 결성해야 한다.

- 자문 위원회에 참여: 각 게마인데 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 주민요청 : 의회에서 협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해당 게마인데에 해당하는 사항만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설문참가 및 설문 요청
- 주민참여 형 예산요청: 독일에서는 27개의 게마인데에서 주민참여 형 예산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주민투표

주민투표 역시 주민참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일정한 숫자의 유권자들이 단체로 청원을 넣어야 한다. 의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물론 주마다 다르다.

독일의 환경운동 역사 중에서 주민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주어지지 않거나 이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어 공식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주민투표를 청원하여 의사를 결정한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21의 경우처럼 반드시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널리 심어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 독일 주민참여 · 공공참여의 역사적 흐름

1.3.1. 물레방앗간 아놀드 사건

독일법계에서는 1770년대 프로이센을 시끄럽게 했던 아놀드 뮐러 사건을 최초의 주민참여 사례로 보고 있다. 아놀드 뮐러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오더강변에서 물레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급 관리가 강물을 막고 잉어 연못을 만들었다. 강물이 줄어들어 방앗간 운영이 어려워진 아놀드 뮐러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당시에는 토지소유주였던 게르스도르프 백작에게 방앗간 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백작은 뮐러씨를 고소하여 이겼는데 백작 자신이 재판관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뮐러씨는 상위재판소에 상소를 올렸으나 다시 패했고 방앗간은 백작에게 몰수되었다. 이 사건이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알려지자 대왕은 뮐러씨의 편을 들어주었다. 다만 프로이센 왕은 재판에 관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판사가 왕의 명령에 불복했다. 그러자 왕이 판사를 체포하여 법정에서 세웠다. 동료 판사들이 판결을 모두 거부했던 사건이 방앗간 아놀드 사건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 사건을 계기로 프로이센의 법을 대폭 수정하게 된 것이다. 직접 동기는 귀족들로 구성된 사법계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때 방앗간이나 잉어연못 등 하천을 이용할 때 시설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관청은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⁵⁾

이 사건이 '참여'제도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 후 이백년이 지난 오늘 독일의 공공참여제도는 커다란 성목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아놀드 사건 이후 공공참여와 관련된 역사적 흐름을 대략 정리하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공공참여제도의 정립에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했던 핵에너지 반대 운동의 경위도 상세히 열거했다.

5) Fisahn, A., Demokratie und Öffentlichkeitsbeteiligung, Mohr Siebeck 2002. pp. 10; 13; 16-17

6) <http://www.whfm.de/7.html>

연도	법제정/사건	설명
1811년	프로이센의 기본법 ALR 중 수자원 이용 (물레방아)에 관한 조항	최초의 주민참여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레방아 신규설치 시 시설운영 허가기관 (당시엔 경찰이 맡았음)에 신청서 제출. ▪ 이를 기존의 물레방아 소유주들과 인근의 토지주들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도입. ▪ 물레방아 가동은 공공자원인 하천을 이용하는 것이며 물길을 한시적으로 막아 낙차를 만들어야 하므로 하천기능에 제한이 오고 이 하천을 이용하는 주변 농가들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음에 착안.
1955	계획확정절차 가이드라인 Planfeststellungsrichtlinie	공청회 제도 도입
1956	독일연방 (서독) 핵위원회 설립	핵발전소 설립에 대해 지자체별로 상당히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남. 뉘른베르크의 베르톨츠하임 Bertoldsheim 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 대신 군드레밍엔 Gundremmingen 에 설립됨.
1960	건설법전 BBauG	모든 연방주 내의 건설,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을 통일하면서 처음으로 기관참여 절차 도입
1970~	다수의 핵발전소 계획됨	본격적인 핵에너지 반대운동 시작됨
1971	도시건설촉진법	처음으로 계획 절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1975	BW 주의 핵발전소 공사장 점령사건	사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28,000 명이 수개월간 공사장 점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발전소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불발됨. ▪ 반핵운동이 전 독일로 번지는 불씨 역할
	반핵운동의 조직화/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연방환경시민단체연합 결성 ▪ 핵에너지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계획절차에서 반대의견 제시 (주민참여) ▪ 헌법재판소에 소송 ▪ 궤기대회 ▪ 바리케이드/ 봉쇄 / 점령 / 시위 / 데모 등

		<p>다양한 양상으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인 와인 농장주들과 축산업자들도 합세. ▪ 과격파들과 온건파들이 손을 잡은 특이한 사례 ▪ 물리학자들도 합세 (Karl Bechert 1901-1981)
1976	건설법전 개정	건설기본계획에 조기주민참여제도 도입
	핵에너지 시민과의 대화창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계획 절차의 주민참여를 보완하는 기구로 정부에서 설립 ▪ 별 큰 소득 없이 단힘. ▪ 당시 서독 정부는 핵에너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
1977	하르트무트 귄들러 Hartmut Gründler 분신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였던 하르트무트 귄들러는 정부가 핵에너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보의 투명성 요구. ▪ 당시 총리 헬무트 슈미트에게 공개서신을 보냈으나 수상이 대화 거부. ▪ 그 반향으로 지금까지 서로 대립했던 여러 환경보호단체와 녹색당 등이 하나의 '전선'으로 결속됨. ▪ 세계생명보호연합 World Union for Protection of Life 합세 ▪ Hartmut Gründler 가 설립한 <생명보호를 위한 워킹그룹>은 이작도 존재하고 있음.⁶⁾
	핵 폐기물 저장소 고어레벤 Gorleben 사건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동독과의 경계지역으로서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이유로 선정됨 ▪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반대운동 시작.
	녹색명단 환경보호, 원자력반대 선거공동체 (GLU)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개의 녹색명단이 합쳐 선거공동체 조성 ▪ 이들이 통합하여 후에 녹색당 결성
1980	녹색당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핵전쟁 단체 중 "녹색명단 환경보호 Green List Umweltschutz"에서 출발
1986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핵운동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됨
1992-1993	정당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에너지 포기에 대한 장기적 목표 수립
	<p>폐광 콘라드 사건 터짐:</p> <p>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츠기터 Salzgitter 에 있는 폐철광에 원자력폐기물 저장소 설치계획. 1975 년부터 시작. (주민참여절차 포함) ▪ 1982 년 계획확정절차 시작 ▪ 문선 결함으로 계획 재수립

	<p>사업을 승인.</p> <p>그 후에도 지지하지 않는 반대운동과 소송 등의 적극적 주민참여의 과정을 대변하는 케이스</p> <p>이런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9월~1993 3월까지 공청회 개최 ▪ 약 250,000 건의 반대의견 제시됨. ▪ 2002년 사업 승인됨 ▪ 담당행정재판소에 소송이 쇄도 ▪ 2006년 소송 기각 ▪ 2007년 연방행정재판소에 상소. 기각됨 ▪ 시설의 결함 발견. ▪ 폐기물 수송계획 포기됨.
1998	사민당 정권 출발 - 슈뢰더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방향이 바뀜
2000	핵산업계화의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포기 목표가 수립되면서 반핵운동도 잠잠해짐
2001	오르후스 협약 정보공개와 공공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참여, 환경정보공개, 단체소송
2006	공공참여법,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단체의 참여권이 강화됨
2010	메르켈 내각의 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포기 합의서 무효화함 ▪ 핵발전소와의 계약을 8~14년 연장
	반핵운동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핵운동단체에 재생에너지사업분야가 합세 ▪ 반핵/친재생에너지 운동으로 발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ttgart 21 과의 연계성
2011.03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모 재개
2011.06	연방의회에서 원전포기 결의	
2013	사전공공참여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프로젝트 승인신청서 제출 이전에 공공참여부터 먼저 실시한다는 규정

표 1. 독일 공공참여 제도의 발전사

7) 선거공동체 (유권자공동체)는 독일과 스위스의 독일어권에만 있는 제도로서 정당을 결성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연합을 결성하여 의회선거에 피선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독일의 경우 지자체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스위스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대개는 시민연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적인 정당과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 “자유 유권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각 지자체 (코무네)에서 마련하고 있다.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연방의회 혹은 주의회 선거에는 참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럽연합의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선거법EuWG 제8조 1항에 의거 “기타 정치단체”로 정의된다.

1.4. 반핵운동의 사회적 영향

1970년대에 시작된 독일의 반핵운동은 그 철저함과 지속성으로 보아 역사상 독일시민사회 최대의, 최고 지식수준의 공공토론을 이끌어 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독일반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각종 단체와 그룹이 모여 반핵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확산되었다. 이들의 도구는 공공시위였다. 특정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특정한 국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구상에서 핵에너지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출발은 핵에너지의 민간이용이었으나 반핵운동자 대부분은 군사적 목적도 반대하였다. 반핵에너지 운동이 환경운동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면, 반 핵무기 움직임은 평화운동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 두 움직임을 서로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환경연합과 단체, 즉 BUND, Robin Wood와 Greenpeace는 설립 당시부터 핵에너지이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므로 이 두 움직임의 공통분모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공공참여제도를 유도한 것이 반핵운동단체들이었다면 2013년 사전공공참여제도를 유도하여 공공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 것은 환경보호단체와 이에 가담한 시민단체였다.

1.5. <슈투트가르트 21>』 - 새로운 분기점

독일철도공사 (Deutsche Bahn)의 프로젝트 Stuttgart 21(이하 S 21)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독일시민저항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공참여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돈독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며 공공참여란 단어가 만구에 회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반 S 21 운동에 참가했던 주민들이 전문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가정주부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층이 고루 분포되었을 뿐 아니라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정권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남부지방⁹⁾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연방 출발 이래로 보수당이 장기집권 했었으나 이 사건으로 2011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녹색당이 집권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11년도에 결국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투표를 실시했으나 아쉽게도 친프로젝트 세력이 과반수를 넘어 무산되었다.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S 21 저항운동은 수많은 여파를 남겼다. 반핵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십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공항소음 반대운동과도 연결된다. 이들의 영향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등지에서도 인프라 시설공사에 대한 반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6. 공공참여의 새 패러다임

연방환경연구원은 2002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1세기에 공공참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참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8) Peter Leusch, Kann Blockieren Sünde sein, Geschichte der Anti-AKW-Bewegung, Deutschlandfunk-Aus Kultur-und Sozialwissenschaft, 2011.05.19. (Archiv)

9) 독일의 정치적 판도를 보면 남북의 구분이 상당히 뚜렷하다. 중북부는 사회민주당이 우세하고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 주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아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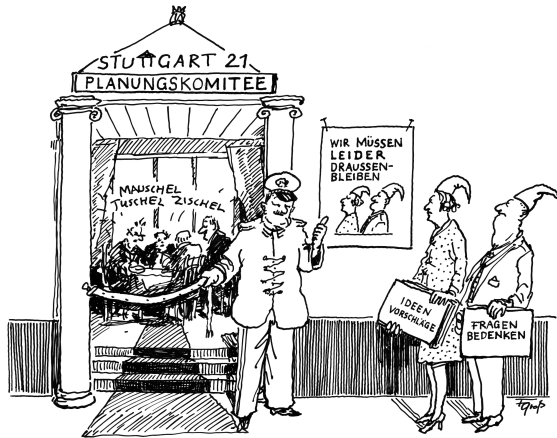


그림 6. “개인파티”. 슈투트가르트 일간지 Stuttgarter Zeitung 에 실린 삽화. 1996.03.16. 안에서는 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질의와 아이디어를 지참한 시민들은 출입이 거부된다.

된다고 밝혔다.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¹⁰⁾

주민이나 단체 중에는 높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주민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제시한 의견이나 대안이 프로젝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¹¹⁾

연방환경연구원이 공공참여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독일의 통일과 함께 시작된 대형 프로젝트 중 『슈투트가르트 21』, 『베를린 공항소음 사건』, 『프랑크푸르트 공항소음 사건』 등이다. 연방환경연구원은 공공참여의 투명성과 이로 인해 얻어진 더 나은 대안이 오히려 계획절차를 단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정 공식참여절차 외에도 비공식적인 공공참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비공식적인 공공참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라 주장한다. 비공식적인 참여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 환경단체들과 수시로 대화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꺾고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공식적인 물밑작전으로 사전에 환경단체나 시민대표들을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빌레펠트 대학 법학과 안드레아스 피잔 Andreas Fisahn 교수가 그 대표자로서 그는 공공참여가 현재 오히려 반민주주의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²⁾

10) Umweltbundesamt [Hrsg.],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n Planungs- und Genehmigungsverfahren neu denken. 2002

11) 저자와 계획승인 내지는 사업허가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두로 밝힌 내용들. 3.3. 사례 참조

12) Fisahn, A 2002

2. 『사전공공참여제도』의 도입

2013년 3월 31일 <공공참여절차를 개선하고 계획확정절차를 균일화하기 위한 법>¹³⁾의 제정과 함께 사전공공참여원칙이 도입되었다. 약자로 계획확정절차통일법PIVereinG이라고 불리는 위의 법은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슈투트가르트 21>이 낳은 결과이다. 사전공공참여란 문자 그대로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공참여를 먼저 실시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략환경평가에서 말하는 조기, 즉 계획절차 중 이른 시기에 수행하는 공공참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규정은 계획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해당된다. 환경영향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금까지 6개의 전문법¹⁴⁾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계획확정절차를 일반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통일하며,
- 사전공공참여제도를 통해 환경사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권을 강화하여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참여도를 높인다.
- 사전공공참여는
 - 사업승인신청 전에 실시하고
 - 공람도서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며,
 - 환경사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등 공공참여권리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해야 한다.¹⁵⁾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위시하여 소비자보호법, 에너지경제법, 연방도로법, 수로건설법, 철도법, 항공법 등의 해당 항목 역시 개정되었다. 연방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사전공공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참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데 환경계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⁶⁾

- 조기참여의 '의무'가 사실상 없으며 그러므로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없다.
- 각 전문법에서 조기참여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구속력이 적다.

사전공공참여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공공이나 환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 사실을 '가능한 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의 주체는 허가기관이 아니라 사업수행자다. 물론 공항이나 철도프로젝트 등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기관이 사업수행자인 경우가 많다. 이 때 공고하는 내용은 사업의 목적, 방법 및 사업이 미칠 영향 등이며 공공참여의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¹⁷⁾

2.1. 이해관계자의 시대와 공공참여 Stakeholder Gesellschaft

13) Gesetz zur Verbesser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Vereinheitlichung von Planfeststellungsverfahren - PIVereinG

14) 소비자보호법, 에너지경제법, 연방도로법, 수로건설법, 철도법, 항공법

15) 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DIP) des Deutschen Bundestags (독일연방의회 문헌정보실), Basisinformationen über den Vorgang. Gesetzgebung PIVereinG. 2013.03.22

16) Deutsche Umwelthilfe (DUH), Stellungnahme zum Entwurf für ein PIVereinG. 2012.02.03

17)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2.1.1. 독일엔지니어링협회(VDI) 와 독일상공회의소(DIHK)의 입장

공공참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룹이 아마도 산업계일 것이다. 더욱이 사전공공참여제도의 경우 사업수행자들이 직접 공공참여절차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산업계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대표하는 독일엔지니어링협회 Verein Deutscher Ingenieure (VDI)의 입장과 경제계의 주역인 독일상공회의소의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

■ 독일엔지니어링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독일엔지니어링협회는 1856년에 설립된 왕립기술학회 베를린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기술공학과 산업기술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기술감시협회를 동시에 설립하여 이익옹호와 더불어 기술 증진을 꾀한다는 목표를 확실히 했다. 최초의 기술 감시 대상은 증기기관이었으며 여기서 기술감시원 TÜV가 파생되었고, DIN, 즉 독일 공업기술표준 역시 VDI에서 기원을 둔다. 공과대학의 설립과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어 공과대학 내에 VDI 지부를 두고 있는 곳이 많다. 지금까지 대기질 기술기준이나 소음과 진동 기술기준을 포함하여 모두 2050 여건의 기술기준을 만들었으며 모든 공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를 포괄한다. 20세기 이후에는 이익단체로서 환경보호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1857년부터 전문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는 등 독일공업기술발달의 중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VDI에서 만드는 기술지침 혹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독일엔지니어링협회는 위의 법제정에 신속히 반응하여 2014년 9월에 사전공공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VDI 7000)¹⁸⁾을 만들어 발표하고 동시에 독일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대형산업프로젝트와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언론의 공동과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참여는 결국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고 이에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일상공회의소** 대표는 “공공참여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공공이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결정은 결국 정치경제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⁹⁾

18) VDI, Handlungsempfehlungen, Großprojekte im Dialog planen - Richtlinie VDI 7000 zu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2014.09

19) T. Fuchs, Stellungnahme zum Entwurf der VDI-Richtlinie für früh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2013. p.3

3. 공공참여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프로젝트/행정절차

모든 계획이나 프로젝트 결정 및 허가절차에 반드시 공공참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공공참여법 및 각 특별계획법에 의거하여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예외 조항도 많다. 일단 공공참여절차의 의무가 있는 계획, 프로젝트와 행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분류	해당 계획/프로젝트/절차
1	행정절차법과 전문법에 의한 계획확정절차/ 사업승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간선도로 ▪ 연방고속도로 ▪ 철도 ▪ 수로, 운하, 홍수방제시설, 제방 ▪ 공항/비행장 ▪ 국도 ▪ 대중교통시설
2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평가 ▪ 환경영향평가
3	도시계획 · 건설계획 (건설법전 제 3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 (FNP) ▪ 지구단위계획 (BP)
4	연방유해물질방지법에 의거한 사업승인절차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 윈드파크 ▪ 채석장 > 10 ha ▪ 정비공장 ▪ 대형축사 ▪ 양조장 ▪ 쓰레기소각장 ▪ 퇴비장
5	광산법에 의거한 사업시설 중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 천연가스 ▪ 철광 ▪ 석염 ▪ 지열 ▪ 금광 등
6	국토이용계획과 공간적정성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계획 ▪ 계획확정절차와 사업승인이 필요한 시설의 입지선정절차

표 2. 공공참여절차의 의무가 있는 계획, 프로젝트와 행정절차

3.1. 환경평가절차와 공공참여

공공참여는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UVPG 제17~2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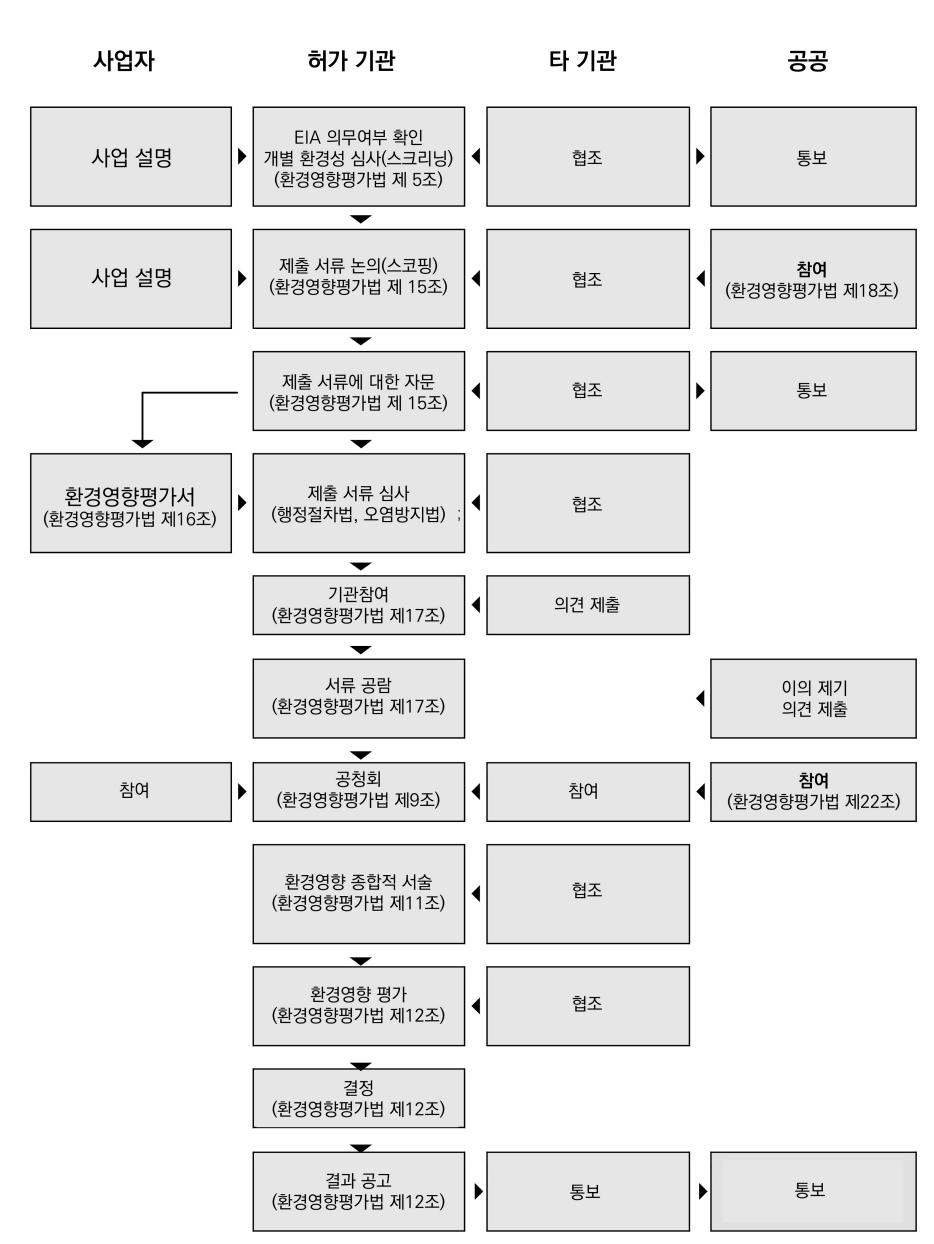


그림 11 :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공공참여 및 법적 근거. 공공참여는 총 2 회에 걸쳐 실시된다. 출처: 독일 환경영향평가협회, modified by Thirdspace Berlin

3.2. 의견제시 · 수렴방법

3.2.1. 이의제기 · 의견제시

▶ **공람도서**: 계획도면, 계획서, 환경보고서 및 기타 전문가 감정서, 기관참여에서 제시된 의견

▶ **공람장소**: 계획수립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 인터넷

누구나 공람된 도서를 읽고 그에 대한 이의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참여주체와 동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이의제기 (Einwendung)**: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혹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단체는 환경단체나 시민연대가 될 수 있으며, 계마인데, 즉 최소 행정 단위 자체가 될 수 있다.

- 환경단체나 시민연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들의 이익이나 권리가 직접 저촉되어서가 아니라 환경의 대변인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 계마인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웃 계마인데의 계획으로 인해 침해를 받는 경우, 혹은 상위계획이나 기타 전문계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의견제시 (Stellungnahme)**: 환경단체가 환경전문기관의 자격으로 참여할 때 창의적이고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계마인데 대표가 참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권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이다.

개인	시민연대, 환경보호단체	계마인데	
이의제기 Einwendung	의견제시 Stellungnahme	이의제기 Einwendung	의견제시 Stellungnah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과 권리가 침해된 개인(토지소유주, 임대인 등) ▶ 침해된 환경의 대변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과 권리가 침해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자격으로 참여

▶ **의견 내용 :**

- 원칙적으로 **계획**의 모든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 대안제시

- 환경단체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출방법

-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엽서, 서면, 팩스 등) 기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의견은 감안되지 않음.
- 될수록 상세하게 서술하되 각 보호매체별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의사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3.2.2.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이 접수증 등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대개 수백에서 수천 건의 의견이 제출되기 때문에 수령증 발급은 생략한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자가 일단 취합하고 분류하여 주제별로 담당 부서에 나누어 보내고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시된 이의와 의견에 대한 답변은 대개 아래와 같은 4 개의 범주로 나뉜다.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은 상호 비교하여 공익이 우선하는 쪽으로 결정한다. 이는 각 담당기관이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 법적 근거 등에 바탕하여 결정하며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견에 대한

- 조정대상이 아님. (전혀 엉뚱한 의견일 때)
- 의견 접수함 (이의 제기 등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을 피력했을 때.)
- 반영. 그에 따라 계획이나 환경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함.
- 반영하지 않음. - 이 때는 근거를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 (법적근거, 상위계획규정사항, 각종 지침이나 법원의 판례 등을 들어서 거절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우송한다.

모든 제출된 의견과 이의,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회의록으로 남긴다. 이 때 기관참여와 공공참여를 구분하여 별도로 만든다.

제출된 의견이 많거나 프로젝트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때 설명회에 대한 안내장을 답변과 함께 보낸다.

설명회 개최 사실을 별도로 공보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경우 일일이 안내장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설명회에서는 제출된 모든 의견들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관계자, 전문가와 주민, 환경단체 등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다시 토론한다. 공청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여러 날 개최할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참여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

■ 독일의 계획단계와 환경평가 및 공공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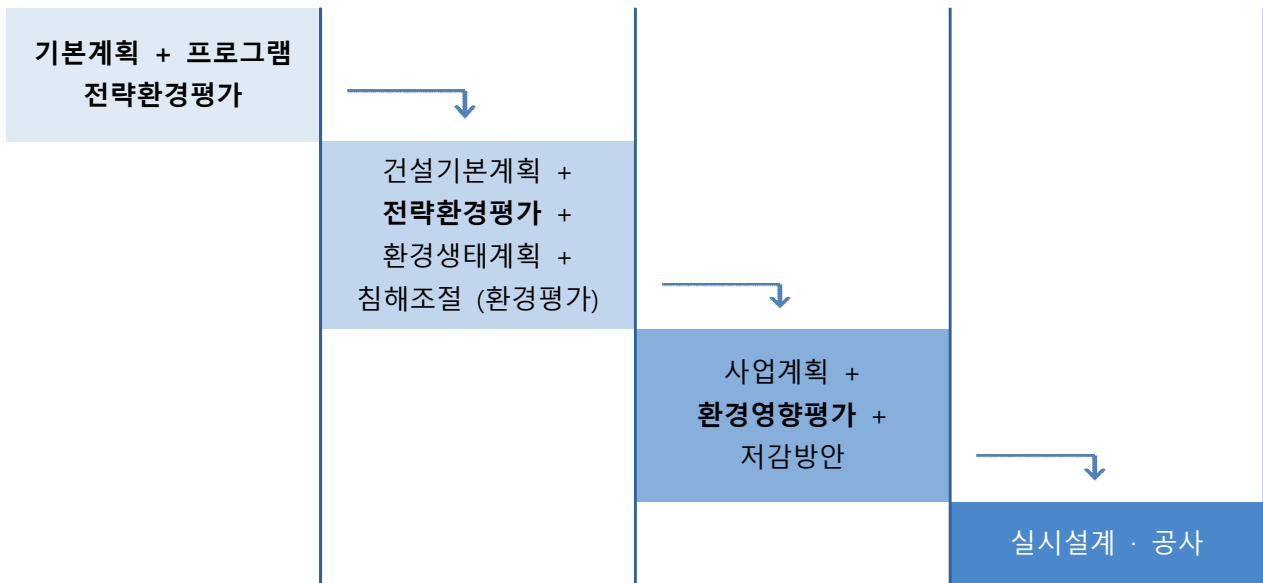


표 4. 독일의 계획·평가 절차. 각 단계별 업무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3.3. 사례 : 브란덴부르크 갈탄광산이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3.3.1. 프로젝트 개요

브란덴부르크 주의 동부는 주요 갈탄생산지다. 비록 연방정부가 늦어도 2040년에 석탄이용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²⁰⁾ 과도기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을 오히려 활성화하려 한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브란덴부르크 주로서는 풍력에너지에 이어 화력발전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부 폴란드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벨초우 쥐트 갈탄광산II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2014년 9월 내각에서 계획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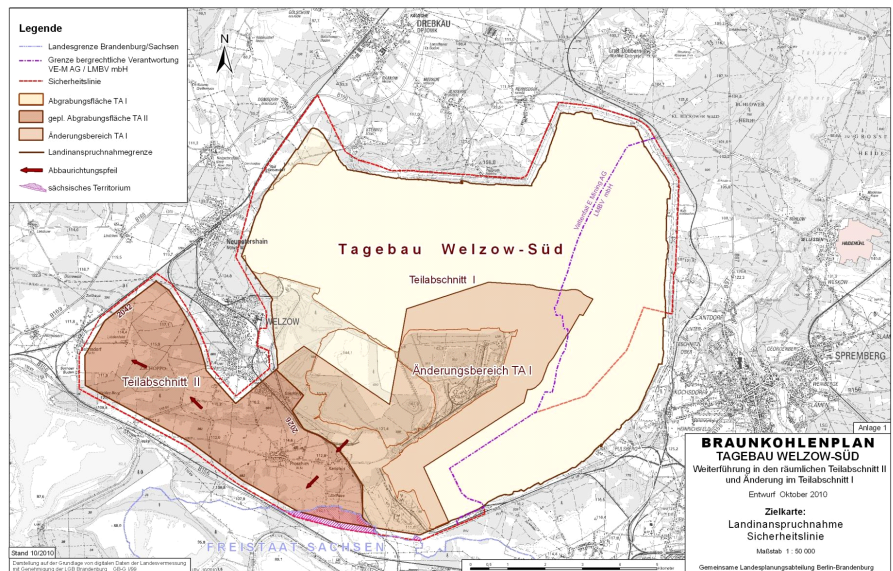


그림 15. 벨초우 쥐트 갈탄광산개발계획 [출처: GL BB]

20) 독일연방의회 소식지, 2014.06.13., http://www.bundestag.de/presse/hib/2014_06/-/283414

계획절차만 큰 7년이 걸렸으며 프로젝트의 성격상 큰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참여도가 대단히 높았다. 2회의 걸쳐 공공참여를 실시했고 두 번째 공공참여의 결과 약 190,000 건의 이의와 의견이 제출되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07.11.15	계획수립시작
2009.06.24	전략환경평가 범위 설정을 위한 스코핑 회의
2011.09.01~11.30	1 차 초안에 대한 기관참여 · 공공참여 ²¹⁾
2012.09.14	1 차 설명회
2013.05.23	갈탄위원회의 제 80 회 회의에서 2 차 공공참여 결정
2013.12.16	1 차 설명회
2014.06.03	브란덴부르크 주 내각에서 계획 통과 됨
2014.09.02	브란덴부르크 주법률 공보에 법으로 발표됨.

두 번의 설명회 결과에 대한 약 300쪽 분량의 회의록은 모두 인터넷에 발표하고 있다. 개인 참가자의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록에서 언급한 참여단체는 대략 아래와 같다.²²⁾

- 정부대표, 각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정당 대표
- 이웃 도시와 게마인데 대표들
- 그린피스, 그린 리그 다수의 환경단체, 연구기관
- 교회
- 주민들

그 중 특이한 것은 6 개의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이다. 모두 32쪽에 달하는 의견서는 의견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 감정서에 가까운 수준이며 다루고 있는 내용은,²³⁾

1. 계획절차에 대한 하자 분석
2. 에너지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
 - 전문가 감정서에 대하여
 - 갈등 상호 조정 절차에 대하여
 - 대안에 대하여
3. 수자원이용의

21) 기관참여와 공공참여를 동시에 실시해도 된다.

22) GL B-Brandenburg, Erörterungsprotokoll 2013

23) Landesbüro anerkannter Naturschutzverbände GbR u.m. Einwendung, Stellungnahme und Äußerung des BUND Landesverband Brandenburg e.V., der Grünen Liga Landesverband Brandenburg e.V. zum Braunkohlenplanverfahren Tagebau Welzow-Süd, 2013.09.17

- 적법성
 - 기술기준
 - 평가방법론
 - 하천수의 오염에 대하여
4. 자연보호와 서식지보호에 대하여
 5. 안전대책에 대하여
 6. 배출량 (극미세먼지, 수은 등)과 건강영향
 7. 거주지 이전 문제 등이다.

환경단체와 자연보호단체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거의 무료 전문 감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목표는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는 데 있다.

2014.11.07. 작성

2018.08.21. 최종 수정

Thirdspace Berlin EA

대표 고정희

참고문헌

법령:

- 환경정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시행령, 2001 제정, 2013년 최종 개정. BMJV, Verordnung über Gebühren und Auslagen für individuell zurechenbare öffentliche Leistungen der informationspflichtigen Stellen beim Vollzug des Umweltinformationsgesetzes
- 공간지리정보법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GeoZG)
- 공간지리정보이용에 관한 시행령 GeoNutzV
- 공공참여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Vereinheitlichung von Planfeststellungsverfahren – PIVereinHG
-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록에 관한 법 PRTR 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Protokolls über Schadstofffreisetzung- und -verbringungsregister vom 21. Mai 2003 sowie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G) Nr. 166/2006
- 환경정보공개법, Umweltinformationsgesetz (UIG)
-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Umwelt-Rechtsbehelfsgesetz – UmwRG
- 자유직에 대한 용역발주법, Vergabeordnung für freiberufliche Leistungen (VOF)
-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문헌:

- BUND 2012, Sechs-Punkte-Programm, Ausbau und Effektivierung der Bürger- und Verbandsbeteiligung p. 3
- Bündnis 90/Die Grünen, Bundestagsfraktion, *Öffentlichkeit Beteiligen, Planungsrechtliche Beteiligungsmöglichkeiten heute und in der Perspektive*, Berlin 2013
- Deutscher Bundestag, *Gesetzes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Umweltinformationsgesetzes*. 2014.05.28
- Fisahn, A., *Demokratie und Öffentlichkeitsbeteiligung*, Mohr Siebeck 2002. pp. 10; 13; 16-17
- Landesbüro anerkannter Naturschutzverbände GbR u.m. *Einwendung, Stellungnahme und Äußerung des BUND Landesverband Brandenburg e.V., der Grünen Liga Landesverband Brandenburg e.V. zum Braunkohlenplanverfahren Tagebau Welzow-Süd*, 2013.09.17
- Manfred Goedecke, *Einführung in die Umweltinformation für Planung und Öffentlichkeit*, Berlin 2013/2014 (세미나자료)

- Peter Leusch, *Kann Blockieren Sünde sein, Geschichte der Anti-AKW-Bewegung, Deutschlandfunk-Aus Kultur-und Sozialwissenschaft*, 2011.05.19. (Archiv)
- Umweltbundesamt [Hrsg.],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n Planungs- und Genehmigungsverfahren neu denken*. 2002
- 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DIP) des Deutschen Bundestags, *Basisinformationen über den Vorgang. Gesetzgebung PIVereinG*. 2013.03.22.
- Deutsche Umwelthilfe (DUH), *Stellungnahme zum Entwurf für ein PIVereinG*. 2012.02.03.
- GL B-Brandenburg, *Erörterungsprotokoll 2013*
- T. Fuchs, *Stellungnahme zum Entwurf der VDI-Richtlinie für früh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2013. p.3
- VDI, *Handlungsempfehlungen, Großprojekte im Dialog planen – Richtlinie VDI 7000 zu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2014.09

links:

- 독일연방의회 소식지, 2014.06.13., http://www.bundestag.de/presse/hib/2014_06/-/283414
- 연방공간지리정보포털, <http://www.geoportal.de/DE/GDI-DE/gdi-de.html?lang=de>
- BMUB (독일연방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정보에 대한 홍보사이트
<http://www.bmub.bund.de/themen/umweltinformation-bildung/umweltinformation/kurzinfo/>
- 독일환경영향평가학회 홈페이지, <http://www.uvp.de/de/mitglieder>
- Hartmut Gründler <http://www.whfm.de/7.html>
 - HOAI, http://www.hoai.de/online/HOAI_2013/HOAI_2013.php
- INSPIRE, <http://inspire-geoportal.ec.europa.eu/>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http://www.unece.org/env/pp/welcome.html>